

공유재산

관리 · 운영 분석제도 도입방안

공유재산 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동산,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은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재산관리 상태 및 활용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측정할 수 있는 분석 틀이 부재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초점이 단순 유지보수에서 개발 및 활용으로 변화하면서, 자치분권에 맞는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지자체 재산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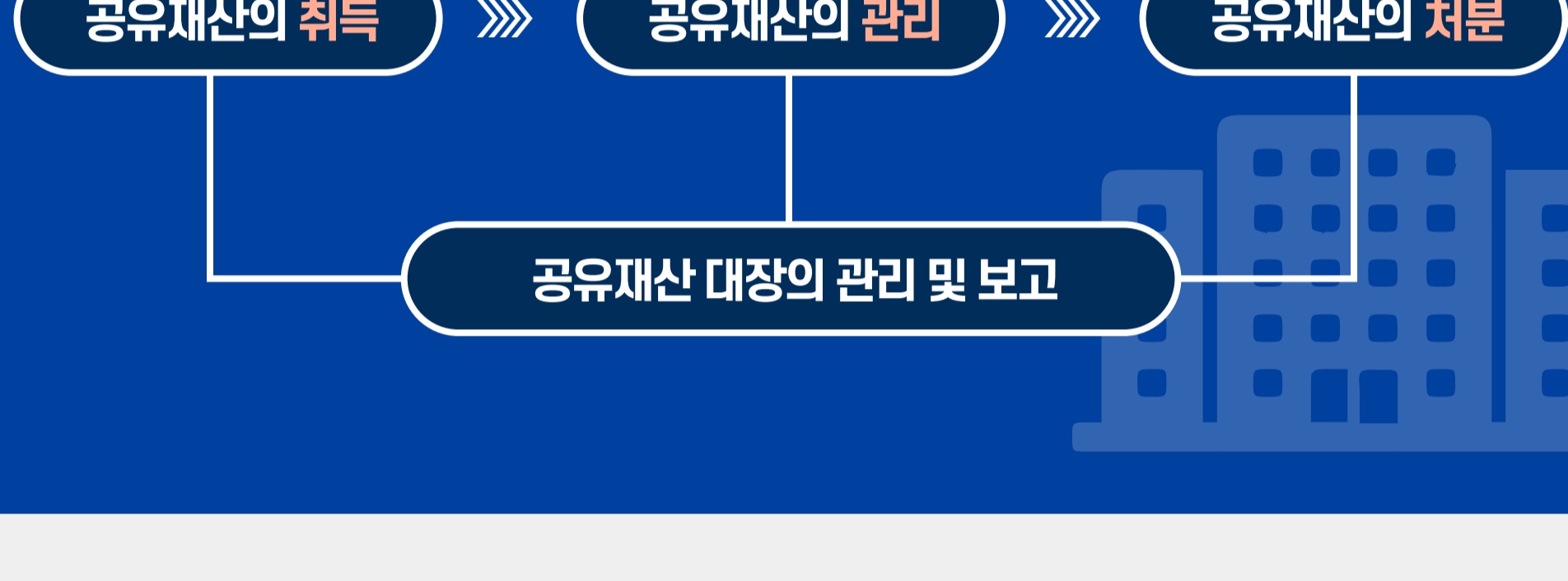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구분		공유재산 사례
공유재산	공공재산 (common asset)	청사, 관사, 시·도립 학교, 병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infrastructure asset)	도로, 시·도립 공원, 제방, 구거, 유수지, 하천 등
	기업용재산 (business asset)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공공개발사업 등
	보존용재산 (heritage asset)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매각용 취득재산 등



공유재산 운용과정

- ▶▶ 공유재산은 자산 순환주기에 따라 재산의 취득 단계부터 관리·운용하고 처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
- ▶▶ 취득, 관리, 처분 단계별로 공유재산의 대장관리와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재산 실태조사, 재산가격의 보고, 권리보전 등이 이루어짐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 공유재산(현금주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재산의 범위를 “물건과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 채권, 물품, 미수금 등이 제외됨
- ▶▶ 복식부기 자산(발생주의 기준)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포괄함

구분	공유재산	복식부기 자산
법적 기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재산의 범위	물건과 권리 (법령규정)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 범위 비교	공유재산 < 복식부기 자산 (공유재산에는 현금, 채권, 물품 등이 제외됨)	

분석제도의 추진 주체 (예시)



공유재산 분석체계

평가부문	평가항목	분석지표
재산관리	관리기반 (3)	실태조사계획대비 실적비율, 은복재산 발굴실적(건 수) 결산과 대장의 일치 여부
	관리운영 (6)	공유재산 전담인력 수, 변상금 징수를 공유재산 매입규모 비율, 기부채납 재산규모 비율, 처분재산 비율, 일반재산 처분 비율
재산활용	징수관리 (4)	사용료 징수율, 대부료 징수율, 연체 비율, 과납금 비율
	위탁관리 (2)	일반재산 위탁 비율, 행정재산 관리위탁 비율
	목적활용 (1)	유류재산 비율
사회적 가치	활용도	일자리 정책 활용도 등 5개



기대효과



▶▶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관심도 제고)



▶▶ 분석결과 주민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 활용도 개선 및 정책환류 유도



▶▶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전담부서, 전담인력 확충)

- #공유재산 #위탁관리 #재산_활용
- #주민_활용 #사회적_가치

[자료출처]
여효성, 이호(2020), 공유재산 관리·운영 분석제도 도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문의]